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9. 23 선고 2021가단3807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경

담당변호사 문충식

피고(선정당사자) B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2. 8. 19.

판 결 선 고 2022. 9. 23.

주 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소외 C과,
가. 피고 D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 중 각 20분의 7 지분에 대한 2019. 11. 28.자
증여계약,
나. 피고 E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 중 각 20분의 2 지분에 대한 2019. 11. 28.자
증여계약,
다.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 중 각 20분의 1 지분에 대한 2020. 2.

7.자 매매예약 및 2021. 1. 4.자 매매계약,

라. 피고 F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제3 부동산에 대한 2019. 11. 14.자 증여계약은이를 각 취소한다.

2. 소외 C에게,

가. 피고 D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 중 각 20분의 7 지분에 대하여 2019.

11.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와 접수 제57266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나. 피고 E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 중 각 20분의 7 지분에 대하여 2019. 11.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와 접수 제57266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다. 피고 B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 중 각 20분의 1 지분에 대하여 2020. 2.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와 접수 제6297호로 마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지원 등기와

접수 제294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라. 피고 F은 별지 목록 기재 제3 부동산에 대하여 2019. 11.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와

접수 제540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전체적 주장

원고는 소외 C에 대하여 629,945,390원(2017. 9. 15. 기준)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C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하거나 매도하였고, 그에 따라

지분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C과 피고들

사이의 증여 내지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C에게 자신들이 취득한 지분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피보전채권에 관한 주장

원고는, C와 G(C의 배우자)으로부터 진주시 소재 H 부지(H공사 자리)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인데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서 이를 받아들여 그들에게 자금을 지원하였다. 이후 원고가 지원금(투자금) 반환을 독촉하자 2013. 7. 9.경 C와 G이 공동으로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 이로써 원고가 C와 G에게 지원(투자)해 준 돈은 2013. 7. 9. 대여금 또는 약정금으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지원금 총액은 977,015,390원(아래 ① ~ ⑥ 합계)이고 원고가 C와 G으로부터 변제받은 돈은 284,070,000원이므로, 최종적으로 629,945,390원(= 977,015,390원 - 284,070,000원)이 원고가 받을 돈이다.

① 2005. 6. 2. C에게 5,000만 원 지급

② 2005. 6. 24. 6억 원 지급(자기앞수표 4억 2,000만 원을 C에게 지급, 1억 8,000만 원도 C이 요구하는 계좌로 입금)

③ 2005. 8. 4. 3,500만 원을 C의 부인 G이 대표이사로 있는 I(주) 계좌로 송금④ 2006. 4. 28.

예금주를 “부동산임대 G”으로 한 통장을 개설, 2억 7,690만 원을 입금하여 그 통장과 사용인감을 C에게 교부하였고, C측에서 2006. 7. 20. 1억

686만 원을 출금

⑤ 2005. 7. 27. C을 대신해 J(C의 동생)에게 설계비로 3,000만 원 송금

⑥ 원고는 C와 G에 대한 자금지원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K조합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그 이자 155,155,390원을 원고가 전액 부담

나. 판 단

우선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갑 제5, 7,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① ~ ⑥의 금액을 지원한 상대방이 C와 G 개인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 6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항의 5,000만 원, ②항의 6억 원, ③항의 3,500만 원, ④항의 1억 686만 원은 I(주)가 송금 받거나 영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2) 나아가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① ~ ⑥의 돈에 대하여 C과 G이 이를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국 원고가 C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음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장형